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2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5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2월 28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세열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(공포 2013.6.21, 시행 2013.12.22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와 평생교육 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을 정하며,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신설(안 제17의2)
- 2)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하여 대부료 요율 적용 항목 신설(안 제25조)

- 3) 대부료,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(연 3%)
신설 (안제31조의2, 제88조, 제88조의2)
- 4)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현행 4%에서 3%로 인하
(안 제34조, 제34조의2)
- 5)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구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준일 완화(안 제36조)
- “1989년 1월 24일 이전”에서 “2003년 12월 31일 이전” 으로 완화
- 6)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, 표현 수정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.06.21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시행령)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「학교용지 대부료율 적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」을 반영하며,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 기준일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8호에 의거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무실을 신설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·수익 할 수 있도록 신설(안 제17의2)하고,
- 2013.07.03 국민권익위원회의 「학교용지 대부료율 적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」인 “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1,000분의 25이상 적용”의 내용을 현행 조례에 신설(안 제25조제4항제5호)하였고,
-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%의 이자율 부과 규정을 신설(안 제31조의2)하였으며, 2013.10.04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(이하 시조례) 제36조와 제36조의2 관련하여 매각대금(조례 제34조)과 교환차금(조례 제34조의2)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현행 4%에서 3%로 인하 하였으며, 변상금과

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(3%)을 신설(안 제88조제3항, 제88조의2)하는 등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

- 시조례 제38조에 의거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익매각 가능 점유 기준일을 “1989년 1월 24일 이전”에서 “2003년 12월 31일 이전”으로 완화(안 제36조) 하였음
- 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 제고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,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서,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